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4일 16시 49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	3

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

2014.04.17 조회수 53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6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의2
유형	1호 - 허가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51조의2(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)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5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7

Yeosu Web Contents

